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20443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20443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5 선고 2021가합700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최혜수

변론 종결 2022. 11. 9.

판결 선고 2022. 12. 7.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5. 선고 2021가합70014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545,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원고"를 "C"로 고쳐 적는다.
- 제1심 판결문 4~5면에 기재된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698,000,000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2	평택시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이하 통틀어 'E 오피스텔'이라 한다)	500,000,000	갑 제15호증
3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L호 (이하 'K 아파트'라 한다)	1,201,000,000	갑 제9호증

1	이 사건 부동산	698,000,000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4	당진시 M 임야	714,048,800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5	광주시 X 임야 120,595m ² 및 지상 건물 중 710.7/121,901 지분	19,646,673	감정인 Y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소계	3,132,695,473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316,052,770	갑 제1 내지 4호증
2	N에 대한 채무	28,493,000	○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3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Q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15,000,000	을 제2, 3호증
4	R은행에 대한 E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0,000,000	갑 제14호증
5	E 오피스텔 임차인 S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	갑 제16호증
6	E 오피스텔 임차인 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8,000,000	갑 제16호증
7	R은행에 대한 K 아파트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64,000,00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8	U회사에 대한 K 아파트 2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03,536,000	갑 제9호증 (채권최고액 기준)
소계	3,115,081,770		

○ 제1심 판결문 5면 [인정근거]에 "감정인 Y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0행부터 14행까지 기재된 ①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직전 B의 재산상태는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 3,132,695,473원, 소극재산 3,115,081,770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17,613,703원(= 3,132,695,473원 - 3,115,081,770원) 초과하고 있었지만,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된 점"

○ 제1심 판결문 9면 마지막행 "223,000,000원"부터 10면 2행의 "상당으로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83,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98,000,000원 - Q 임대차보증금 415,000,000원) 상당으로서"

○ 제1심 판결문 12면 1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Y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는 698,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8. 5. 시가는 1,01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이 415,000,000원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3.~5.경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여 위 임차권이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이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95,0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8. 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1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41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45,000,000원¹⁾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는, B가 C를 운영할 당시 보유한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등 자산가치가 큰 재산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의 주장도 B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2017. 12. 20. 이전 C의 자산 규모에 관한 것이다), 오히려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8. 7. 6. 김포시 W 등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을 매각한 상태였다. 거기에 앞서 인정한 C의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세부적으로 제1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적극재산 중 E 오피스텔의 가액을 5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지적하며, K 아파트 시가는 U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3,536,000원을 공제해도 1,460,000,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과 당진시 M 임야의 시가에 대해서만 다투었고, 이에 시가 감정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E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20. 7. 20.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서가 증거(갑 제15호증)로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가를 인정한 제1심에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K 아파트의 시가는 등기부(갑 제9호증)에 기재된 실거래가(B가 2019. 10. 26. 매도할 당시의 가액이다)를 토대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U회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3,536,000원은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의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B가 2017. 12. 7. Z에게 C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16. C에 부동산을 증여해 C의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한 바 있고(을 제4, 5호증), 그 이후 B로서는 C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B가 오랜 동안 C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여전히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C의 영업·운영상황, 변제능력 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오영상

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 P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50,000,000원도 공제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P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9. 2. 25.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